



휴스턴 한인회



법무법인 성현

법률 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서

휴스턴 한인회 윤건치 회장(이하 “갑”이라고 한다)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(이하 “을”이라고 한다)는 쌍방의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자 본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갑 회원의 한국 관련 업무 및 기타사항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

갑과 을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갑의 한국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적 조언
2. 갑의 한국 진출을 위한 법률적 조언
3. 갑 및 기타 관련자의 한국에서의 상속, 유류분, 유언공증 등에 대한 법률 상담
4. 갑 및 기타 관련자의 한국 내 재산의 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언
5. 기타 갑과 을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홍보)

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따른 협력사항에 대하여 언론보도,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사회일반에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다.

제4조(협의조정)

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

갑과 을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비밀 유지 의무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.

제6조(효력 및 유효기간)

본 협약은 갑과 을 양 기관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업무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공동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2월 23일

휴스틴 한인회

회장 윤건치

법무법인 성현

대표변호사 최재응
